

부천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0. 8. 25

나. 제출자 : 부천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00. 8. 25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80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(2000. 9. 1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도시과장 진영표)

폐지이유

○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는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을 조정·처리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분쟁에 따른 민원신청이 전무하여 그 존치의 기능 및 효율에 문제가 있었던 바 이에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(2000. 1. 28 공포, 법률 제6236호)되면서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하였기 우리 시도 상위법과 연계 관련 조례를 폐지 정비하고자 함

주요골자

○ "동 조례 폐지"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○ 없 음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○ 없 음

나. 반대토론

○ 없 음

5. 심사결과

○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요지

○ 없 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 음

부천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

의안번호	제371호
의결년월일	2000. 9. 5 (제80회)

제출년월일 : 2000. 8. 25

제출자 : 부천시장



제5조(위원장의 직무)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.

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(회의 소집) 위원회 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.

제7조(의사)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8조(간사 등)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 및 서기는 부동산 중개업무 담당주사 및 담당이 된다.

제9조(조사)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위원 또는 구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중개업자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.

제10조(회의록) ①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.

1. 개최일시 및 장소
2. 출석위원 성명
3. 의결내용
4. 기타 중요한 내용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,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.

제11조(수당 등)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중 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범위 내에서 "부천시위원회설비변상조례"에 의거 일비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운영 및 그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<1995. 1. 14 조례 제1321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1998. 10. 10 조례 제1603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